



제38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검 토 보 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 등의 손실 보상 등〉

■ 유정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8730호)

2021.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안의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4
2. 조문별 검토	5
가. ‘예술인등’의 정의	5
나. 국가의 책무 및 예술인등 지원	6
다.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지원위원회	7
라. 실태조사	9
마.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 및 보상금 산정 기준	10
바. 권한의 위임	11
※ 참고자료	13
1.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안 제출현황	13
2.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 사업체(기획업자) 현황 비교	15
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현황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유정주의원 등 31인

나. 발 의 일 : 2021. 3. 12.

다. 회 부 일 : 2021. 3.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업종들에서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특히, 공연, 축제,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각종 행사들이 취소와 연기를 반복하고 있어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이하 “예술인등”이라 함)이 계약 파기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예술인등 가운데에는 프리랜서가 많고 계약 형태도 단기 계약이 주를 이루다보니 피해의 규모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손실을 입은 예술인 등의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위원회(이하 “손실보상지원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라.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게도 적용함(안 부칙 제3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콘텐츠제작자 및 콘텐츠사업자(이하 “예술인등”이라 함)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제한 등 방역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특히, 공연·축제·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와 연기를 반복하고 있어 예술인등이 계약 파기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예술인등에만 한정되는 지원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체육, 관광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화산업 분야 피해 현황('21.2.28 기준)>

- **(예술분야)** '20.1~'21.2월 중 공연·미술시장 매출 피해 5,185억원, 사업체 종사자 고용피해 1,865억원,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3,149억원 추정(문화관광연구원)
- **(영화)** 월 관객 수 역대 최저치를 기록('20.4월, 97만명)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관객 수·매출액 80% 가까이 감소(△200백만명, △16,853억원, '20.2.1.~'21.2.28.)
- **(대중음악)** '20년 공연 매출액 전년 대비 85% 감소 (△3,000억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작성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은 본문 15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 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손실보상 제6조 예술인등 지원 제7조 손실보상지원위원회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제10조 보상금 산정 기준 제11조 다른 보상과의 관계 제12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13조 소멸시효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5조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2. 조문별 검토

가. ‘예술인등’의 정의

제정안은 손실보상 및 지원 대상인 ‘예술인등’을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콘텐츠산업제작자 및 콘텐츠사업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¹⁾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지정한 감염병으로서 세계보건기구가 COVID-19로 공식적으로 명명한 감염병을 말한다. 2. “ <u>예술인등</u> ”이란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을 말한다. 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예술인</u> 나.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u>문화예술기획업자등</u> 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u>콘텐츠제작자</u> 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u>콘텐츠사업자</u> 3. “방역대책”이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말한다.

첫째, 제정안은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²⁾을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에

1) 예술인 및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따른 손실보상 관련 논의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에 따른 ‘업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업체’와 계약을 맺은 예술인 등 ‘종사자’에 대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³⁾(고용노동부)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예술인 외에 제정안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한 문화예술기획자등, 콘텐츠제작자 및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의 대상인 소상공인과 상당 부분 중복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의 책무 및 예술인등 지원

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4조), 자금 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 정 안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한 예술인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상 인원은 예술인 총 17만 8,540명 중 10만 3,000명임(2018년 예술인실태조사).

3)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의 형태로 지원 중(프리랜서 예술인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 포함), 1·2·3·4차 지원금 중 ‘문화공연관련 종사원’ 직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4,152명(530억원) 지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 등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체(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는 총 347,057개 사업체의 85.2%에 해당하는 295,582개임.

제 정 안
제6조(예술인등 지원)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종합적인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실시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손실보상 및 각종 지원시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지원위원회

제정안은 국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예술인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제 정 안
제5조(손실보상)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보상지원위원회) ①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한 예술인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위원회(이하 “손실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손실보상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2. 손실보상 및 지원의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손실보상 및 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손실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가 의무로 명시하고, 손실보상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사항을 손실보상지원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업종 관련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규정하기보다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제·개정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살펴보고 이들 법안과 통합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술분야의 코로나19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손실보상 논의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피해구제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금액·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 입법화 수준과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 작업의 선행이 필요하므로 예술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개별 법제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실태조사

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실태조사) ①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복지법」은 제4조의3⁵⁾에서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특정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조사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손실보상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마.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 및 보상금 산정 기준

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등의 절차 및 보상금 산정 기준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제 정 안
제9조(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술인등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안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상금의 산정근거, 지급 결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산정 기준)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 1. 코로나19 발생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이익과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 기간의 이익 간 차액 2. 코로나19 발생 전 예술인등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중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파기된 계약의 금액

먼저, 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고려기준 중 하나로서 코로나19 발생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이익과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

기간의 이익 간 차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두 기간의 이익 간에 차액이 발생한 것이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 대책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코로나19 발생 전 예술인들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중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파기된 계약의 금액을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책의 변화로 계약불이행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발생 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여 손실 보상을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바. 권한의 위임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8

참고자료1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안 제출현황

○ 제정법안

순번	제명(題名)	발의 의원	의안번호
1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동주의원 등 22인	2107308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덕의원 등 63인	2107601
3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2107819

○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번	발의 의원	의안번호	주요 지원, 시책 등
1	최승재의원 등 16인	2107383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 실시
2	소병철의원 등 11인	2107918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대출이자 감면·세제 감면·사회보험료 감면·공과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지원
3	윤재갑의원 등 12인	2108027	국세·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금융회사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 유예, 국민연금 등을 담보로 한 무이자 추가 대출 등의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번	발의 의원	의안번호	주요 지원 내용 등
1	성일종의원 등 12인	2106802	조세 감면, 포장·용기 구입 비용과 배달료를 지원
2	전용기의원 등 13인	2106845	상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
3	홍문표의원 등 11인	2106853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일부 지원
4	권명호의원 등 10인	2107158	재난지원금 지급 등

5	강훈식의원 등 15인	2107403	조치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 사업장 차임, 조세 등의 지원 등
6	정청래의원 등 10인	2107652	4대 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감면
7	정일영의원 등 18인	210773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추가
8	서영교의원 등 10인	2107807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 사업장 임대료, 조세 등의 금액을 지원
9	이철규의원 등 15인	21078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기간 연장·유예, 이자 감면
10	소병철의원 등 11인	210791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
11	권영세의원 등 20인	2108036	매출손실액의 100분의 50 이상 등의 기준에 따라 손실 보상
12	정청래의원 등 10인	2108143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13	송갑석의원 등 11인	2108428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등
14	윤영석의원 등 10인	2108463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감면

참고자료2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 사업체(기획업자) 현황 비교

-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대상(‘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속하는) 소상공인은 ‘18년 기준 3,236,238개

* (법)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시행령)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이외 업종 5명 미만)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단위: 개, %)

구 분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체 수	3,813,723	3,236,238	84.9	3,690,297	96.8	118,714	3.1	3,809,011	99.9

※ 소상공인 관련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3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중략)...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 4. (생략)

□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 산업분야의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 수: 295,582개
 ☞ 전체 문화예술 사업체(347,057개)의 85% 수준

<종사자 규모별 문화예술 사업체 수 현황 (2018년 기준, 20.7월 발간)>

(출처: 2018년 문화체육관광 산업통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췌, 단위: 개)

구 분		1 ~ 4인	5 ~ 9인	10 ~ 19인	20 ~ 49인	50 ~ 99인	100 ~ 299인	300인 이상	합 계
총 계		295,582	33,954	10,344	5,042	1,151	747	237	347,057
문화 산업	출판산업	19,653	3,274	1,292	723	166	100	38	25,246
	음악산업	36,885	349	78	23	6	9*		37,350
	영화산업 및 방송산업	2,530	595	391	590	145	83	20	4,354
	광고산업	16,060	3,092	1,097	407	112	85	28	20,881
	게임	12,290	3,657	522	180	43	70	24	16,786
	시각그래픽 및 캐릭터	27,183	2,132	719	294	90	55	29	30,502
소 계		114,601	13,099	4,099	2,217	562	402	139	135,119
예술 산업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2,854	697	563	346	66	48	7	4,581
	문학 및 출판	27,865	4,594	1,432	812	175	101	33	35,012
	공연	28,402	2,220	611	287	67	67	13	31,667
	시각예술	35,419	4,866	1,428	475	105	57	37	42,387
	공예	86,441	8,478	2,211	905	176	72	8	98,291
소 계		180,981	20,855	6,245	2,825	589	345	98	211,938

* 음악산업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100인 이상으로 재범주화

참고자료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현황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
- (지원조건)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 25% 이상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요건>

① 1차 지원금 (신청 : '20.6.1~7.20)

- 자격요건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2개월 기간 중 월1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자 포함)
- 소득감소요건 : '20.3~4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평균소득 또는 '19.12~'20.1월 또는 '19.3~4월 중 특정 월)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

② 2차 지원금 (신청 : '20.10.12~10.23)

- 자격요건 : '20.6~7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2개월 기간 중 월1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자 포함)
- 소득감소요건 : '20.8~9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평균소득 또는 '20.6~7월, '19.8~9월 중 특정 월)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

③ 3차 지원금 (신청 : '21.1.22~2.1)

- 자격요건 :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2개월 기간 중 월1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자 포함)
- 소득감소요건 : '20.12~'21.1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평균소득 또는 '20.10~11월, '19.12~'20.1월 중 특정 월)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

④ 4차 지원금 (현재 신청 중 : ~ '21.4.21) * 기존 1·2·3차 수혜자 65만명(50만원) 지급 완료

- 자격요건 :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2개월 기간 중 월1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자 포함)
- 소득감소요건 : '21.2~'21.3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평균소득 또는 '20.10~11월, '20.2~'20.3월 중 특정 월)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

- (지원 현황) '문화공연관련 종사원(예술인 등) 24,152명(530억원) 지원
(1차 16,756명 + 2차 3,749명 + 3차 3,647명)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51만명/150만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차 수혜자) 47.3만명/50만원,
(신규신청자) 14만명/150만원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2차 수혜자) 56.7만명/50만원,
(신규신청자) 17만명/100만원